

[별표 2] <개정 2018. 12. 11.>

분뇨수집 · 운반업의 허가기준 (제29조제1항 관련)

시설 및 장비	기술인력
가. 사무실(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에 소재)	수질환경산업기사, 위생사, 환경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영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
나.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 (용량의 합계가 서울특별시 지역은 3만 리터 이상,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, 그 밖의 지역은 3천600리터 이상)	
다. 차고(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)	
라. 복합가스(산소, 일산화탄소, 황화수소)측정기 1대 이상	

비고 :

1. 기술인력란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「위생사에관한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.
2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 ·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분뇨수집 · 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무실 및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3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상위 등급은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직무로 한정한다.
4. 흡인식 차량 및 차고에 대하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영업으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5. 복합가스측정기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, 산소가스측정기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그리고 황화수소측정기를 각각 보유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복합가스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.